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48

제출연월일 : 2015. 6.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2014년도 4월 개장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화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도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(안 제12조제2항, 별표 2)

나.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근거법규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2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예산담당 협의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2015. 5. 18 ~ 2015. 6. 9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구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자전거의 주차요금)”을 “(자전거의 주차요금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, “운전면허증”을 “교육수료증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·자치행정과장”을 “건설도시국장, 건설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제178회-본회의제2차부록)

별지

【별표 1】

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1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
  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

  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

  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(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·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)

2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: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

3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
  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물

  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(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

  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

   라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

   마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시설물(위락시설 중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,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·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

< 비고 >

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【별표 2】

공공자전거 이용료(제12조제2항 관련)

종 별	기준	이용료		비 고
		평일	토·일요일	
다인승(4인승)	1시간	무료	2,000원	초과 30분당 추가요금 500원
남성·여성·주니어·2인승·어린이용			1,000원	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·2. (생 략) 3.“공공자전거”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. 4. (생 략) 5. “자전거대여소”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 6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-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----------. 4. (현행과 같음) 5.---------- 사람----------. 6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관리)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. ② (생 략)	제9조(자전거주차장의 관리) ① ---------- 해당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자전거의 주차요금)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. 다만, 자전거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. <신 설>	제10조(자전거의 주차요금 등) ① ----------. <단서 삭제>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·운영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제11조(자전거보관대·수리센터·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) ①~③ (생 략) ④ 자전거보관대·수리센터·대여소 등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	제11조(자전거보관대·수리센터·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) ①~③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(제178회-본회의제2차부록)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공공자전거의 운영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·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.	제12조(공공자전거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구청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제15조(자전거타기의 교육 등) ①~② (생 략)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. ④~⑤ (생 략)	제15조(자전거타기의 교육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사람---------- ---------- 교육수료증----------. ④~⑤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생 략)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·자치행정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1. · 4. (생 략) ④ (생 략)	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건설도시국장, 건설과장---------- ----------. 1.4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
현 행

【별표】

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1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 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
 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
 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(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·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)
2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: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
3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 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물
 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(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
 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
  라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
  마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시설물(위락시설 중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,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·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

< 비고 >

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<신 설>

개 정 안

【별표 1】

(-------------------)

1. --

----

2. --

----

3. --

【별표 2】

공공자전거 이용료(제12조제2항 관련)

종 별	기준	이용료		비 고
		평일	토·일요일	
다인승(4인승)	1시간	무료	2,000원	초과 30분당 추가요금 500원
남성·여성·주니어·2인승·어린이용			1,000원	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 안 번 호 1148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❍ 제출연월일 : 2015. 6. 30.(화)
- ❍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❍ 위원회회부 : 2015. 7. 1.(수)
- ❍ 위원회심사 : 2015. 7. 17.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❍ 2014년도 4월 개장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 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화 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도모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❍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
(안 제12조제2항, 별표 2)

❍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4. 근거법령

❍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2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강기환)

❍ 본 개정 조례안은

○ 2014년 4월 개장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화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
❍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
❍ 다만, 제12조 제2항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데, 이에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